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

가. 보조금 지급안내

지급 대상기간	접수기간	지급(예정)일	연료	사용기간	지급단가 (원/리터)
2026.6.1.~8.31. (3개월)	2026.9.1.~9.4.	2026.10.16. (예산사정 등 변경가능)	경유	2026.7.30. ~ 현재	213.00원/ℓ
				2026.5.1. ~ 7.29.	213.00원/ℓ
			LPG	2026.7.30. ~ 현재	115.14원/ℓ
				2026.5.1. ~ 7.29.	151.57원/ℓ

나. 신청 장소 :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(☎ 02-2155-7196)

- 해당 화물협회 및 운송회사에서 일괄수합하여 신청 또는 지입차주가 직접 신청

※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반드시 준수

다. 신청 방법 :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(※ 등기 접수 권장)

- (06750)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, 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
운수지도팀 유가보조금 담당자

라. 신청 대상(자)

- 2009년 5월 이후부터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, 아래의 경우 서류신청 가능

-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(따로 표시해서 제출)
- ② 신규허가(양수·법인합병·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)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(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 및 제26조 참고)
-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·훼손·정보변경(화물차주명/자동차등록번호/유종)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
-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
마.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

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, 유류구매내역서 각 1부

신청인 정보, 차량번호, 전화번호, 신청액, 날인, 월별 유류구매량, 주행거리 등 기재[별지1,2호 서식]

②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{유종(경유, LPG, CNG), 단가, 주유량 기재된 것}

- 이 외에 소득공제용(지출증빙용) 현금영수증 제출 시 유종, 유류주입량, 단가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이 있는 것에 한함. 유종, 단가,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제외

※ 간이세금계산서, 캐시백 적립전표, 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**증빙자료로 불인정**

③ 자동차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④ 위·수탁관리계약서(날짜 정확히 기재) 또는 직영차량확인서 1부

⑤ 입금통장 사본 1부

- 지입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통장 사본 첨부 시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
- 지입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운송회사에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주가 구청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(본인 인감증명서 첨부)

⑥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제출

바. 톤급별 보조금 한도액

○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한도량

(단위: ℓ/월)

구 분		1톤이하	3톤이하	5톤이하	8톤이하	10톤이하	12톤이하	12톤초과
경유	월 지급한도량(ℓ)	683	1,014	1,547	2,220	2,700	3,059	4,308
LPG	월 지급한도량(ℓ)	1,024	1,521	2,320	-	-	-	-

○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

(단위: ℓ/월)

구분	총중량 10톤미만	총중량 10톤이상	총중량 20톤이상
구 난 형(ℓ)	683	1,014	
특수 작업형(ℓ)	683		1,014

사. 기타사항

- ① 유류보조금 과다 신청 시 지급(착오 포함)된 금액 환수 조치 및 차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(6개월~1년)되며, 고의 및 상습적으로 보조금 수혜 관련 위반 사실 확인 될 경우 형사고발,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복지카드 사용은 복지카드에 등재된 차량만 주유 가능하며, 차량번호 및 유종변경 시 즉시

재발급 받아야 하고, 동일인 소유의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및 위·수탁 계약 해지 후 복지카드 주유하는 경우는 부정 사용으로 지급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② 풀카고 및 트랙터 등 차량수송용 화물차량은 신청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적재량 확인 후 톤급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③ 상기내용을 필독하시기 바라며, 특히 운수업체(협회)에서는 현물출자(지입차주)분들에게도 위 사항을 안내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④ 번호판 미교체 차량의 지급 대상기간 중 신청서 제출분은 차후 새 번호판 교체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
- ⑤ 양도·양수 시에는 월별 소유자별로 각각 보조금을 따로 신청하되, 소유자가 변경된 해당 월은 양수자가 보조금 신청(양도자와 정산 처리)
- ⑥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, 건설기계,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

끝.